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2935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임금 평균액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로, “전체 근로자를”을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그 의료기관”을 “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폐질(廢疾)상태”를 “중증요양상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질등급”을 각각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폐질상태”를 “중증요양상태”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폐질등급”을 각각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폐질이”를 “중증요양상태가”로,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폐질””을 ““중증요양상태””로, “폐질등급”을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폐질이”를 “중증요양상태가”로, “폐질등급”을 각각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직장적응훈련비”로,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직장적응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을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을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장애급여자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이 끝난”을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로 한다.

제7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③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재활운동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시작하였을 것
2.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 다만, 장해급여자가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2조 후단 중 “폐질등급”을 “중중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72조의2, 제77조의2, 제79조의2 및 제8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는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회의의 심의를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

② 공단은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기준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의 처방
3. 수술을 제외한 처치,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③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77조의2(보험급여수급계좌) ①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여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급여를 보험급여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공단은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해당 보험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수급권자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면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수급권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법 제84조의2제2항에서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정수급자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대책임자가 사망한 경우
2.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정수급자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대책임자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징수해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공단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해당 금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4. 공단이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정수급자의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명단 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 법 제8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제106조제1항 중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소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11조제5항(중전의 제3항) 후단 중 ““부위원장””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공단이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관계의 성립·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17조제1항제2호 중 “폐질등급”을 “중중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제1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특진의료기관은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결과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찰받은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유해요인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에 관한 상담, 안내,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2조제1항제2호에 자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보험연도에는”을 “중·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로 한다.

-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하는 사람
- 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하는 사람
- 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
- 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

제125조제2호 중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콘크리트믹서트럭을”을 “건설기계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를 “사업체노동력조사”로 한다.

별표 3 제5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7호차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을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으로 한다.

-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별표 3 제10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중전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중전의 다목) 중 “베릴륨”을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중전의 사목) 중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로 하고, 같은 호 파목(중전의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부비동(副鼻洞)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별표 8의 제목 및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폐질등급”을 각각 “중중요양상태등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제65조, 제70조, 제72조, 제72조의2, 제77조의2, 제79조의2, 제81조의2, 제117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2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5호·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험급여를 신청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급여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665호, 2018. 6. 12. 공포, 12. 13. 시행)됨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개를 제외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통원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제32조제3호 신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사고로 보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봄으로써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함.
- 나. 직장적응훈련비 지원 범위 확대(제70조제2항)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경우에만 직장적응훈련비를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경우에도 직장적응훈련비를 지급하도록 함.
- 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등 구체화(제72조의2 신설)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을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 등을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진찰, 검사, 약제의 처방 또는 재활 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병증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내용을 구체화함.
- 라.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마련(제79조의2 신설)

보험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가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개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효과와 명단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간의 균형을 도모함.
- 마. 직업성 암 인정기준 확대(별표 3 제10호)

석면 노출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의 직업성 암 인정기준을 노출기간, 잠복기간 및 동반 질환과의 연관관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벤젠의 경우 노출기준을 현행 1피피엠에서 0.5 피피엠으로 낮추며,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에 비호지킨림프종을 추가하는 등 직업성 암 발병요인 중 과학적으로 연관성이 밝혀진 유해물질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반영하여 재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